

포스코기술투자(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을 담은 스투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당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보다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당사는 펀드의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펀드의 정관 또는 규약에 펀드에 대한 회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명문화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위탁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당사는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투자대상회사의 산업 환경, 사업내용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능동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유도하고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와 출자자 사이 및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규정, 감사규정 등 필요한 사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투자회수 과정에서는 회수위원회에서 이해상충문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도록 하여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및 해결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임직원들로부터 매년 준법서약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이해상충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상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예방시스템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준법 및 내부통제준수를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이해상충 등 문제에 대해 지적 및 대응 요청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의 정관 및 규약에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출자자에게 상세히 보고한 후 펀드 규정 및 출자자의 동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및 위기발생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임시 및 정기주주총회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특성에 맞춰 가치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가치제고전략의 수립을 통해 가치제고방안을 제공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 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반자 의식을 제고하되, 투자심사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하여 내부 투자업무규정 내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리 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위원회 및 회수위원회 운용을 통해 투자 및 회수에 대한 투명성과 준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위원회 단계에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회수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수 기준과 정책을 추구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합니다.
-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안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와 충분히 협의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의 정관 및 규약에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보고 및 투자대상회사들의 현황과 사후관리 활동, 주요 이슈나 변동사항 등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고시스템을 ERP에 내재화하는 등 해당 보고의 원활한 수행이 보장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당사는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펀드총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펀드 운용현황 및 활동내역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운영하며 회사 경영 및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감독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확립하였으며, 투자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준법성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책임관리자 : 준법감시인 박종목 부장 (02-6457-6408)